

## 【 19 】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8. 12. 7.

제 출 자 : 양주군수

## □ 제정이유

- 재난관리법('97.8.30) 및 동법 시행령('98.2.24)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토록 개정되었고, '98 기금운용 개선계획(경기예산 13300~139 '98.3.11)에 따라 양주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서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함.

## □ 주요골자

-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방법을 정함(안 제2조)
  - 적립금·기금운용 수익금, 기타수입등
-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함(안 제4조)
-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른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내용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담당주사

##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해대책기금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수입금 등

2. 재난관리기금

-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 · 관리)** ① 군수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 관리를 위하여 양주군재해대책기금과 양주군재난관리기금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②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주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주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실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용자조건) 제4조와 규정에 의한 재난관련기금의 용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수수가 정한다.

1. 용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5천만원 이내, 일대주택 이주비는 셋째로 2천만원 이내
  2.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 이하
  3. 용자기간은 8년이하
  4.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양주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각각의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동)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금의 회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이 체납 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폐지조례)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정 요지

### □ 기금의 조성

#### ○ 재해대책기금

- 재해대책금의 대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자당세율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143,737천원)

#### ○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자당세율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37,184천원)

### □ 기금의 용도

#### ○ 재해대책기금

- 재해사전대비 절건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으하는 사업
  -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 <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업 >
-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 시설 등의 정비사업
  -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 제외)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응수로, 배수로 및 브의 정비사업
  -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 ○ 재난관리기금

-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주주택으로의 이주지원
  - 재난이 발생한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을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 복구등 응급조치
  -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 < 재난관리기금의 용자 조건 >
-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양주군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정

### □ 제정이유

재난관리법('97.3.30) 및 동법시행령('98.2.24)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기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토록 규정되었고, '98기금운용 개선계획(경기예산 13300-139 '98.3.11)에 따라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97.2.24 1602호)에 의거 적립·운용중인 양주군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적립할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조례로 정함으로써 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코자 함.

### □ 주요골자

- 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조성방법을 정함. (안 제2조)
- 나.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4조)
- 다.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따른 회계관리, 결산 및 보고내용을 정함. (안 제7조, 제8조)

### □ 제정조례(안) : 별첨

###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58조, 제59조
-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4조, 제55조

###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 예산수반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의 최근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
-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군의 최근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연액의 1천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

○ '99년도 기금 적립예상액 : 185,321천 원

- 재해대책기금 : 148,737천 원
- 재난관리기금 : 37,184천 원

□ 사전 예고결과 : 의견없음('98. 7. 29 ~ 8. 17 일별 예고)

□ 기타 참고사항

○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공문사본

(재난 14000-453호, '98.6.29)

경  
기

FAX	전화번호	11190
수신자	나10-	03
우편번호	249-3639	신자

우 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애산로3가 1번지 / ☎(033) 249-3882 FAX 249-3639 월금: 길진설

문서번호 제는 14000 - 453

시행일자 1998. 6. 29 (년)

경 우

발 을 발행국장

참 조 인방위재난관리과장

전 결	회장 200.	지 시
집	일자 1998. 6. 29.	집
시간		시간
수	번호 1998. 6. 29.	재
처	리 과	동
답	달 자	장

제 목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송부

- 경기도 의회 127회 일시회에서 의결 승인된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 재난관리기금조례가 미제정된 시군에서는 자체 실정에 맞는 조례제정과 함께 기금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 공포된 시군에서는 공포 즉시 1부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 률 일 : 조례1부, 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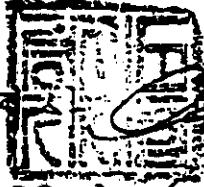
경 기 도 지 사

인방위재난관리국장 전결

발 는 곳 : 경

경기도의회 제12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기도지사 직무대리 행정부지사



1998년 6월 29일

경기도 조례 제223/호

##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재해대책기금

-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수입금 등

### 2. 재난관리기금

-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 나. 기금의 운용수익금
- 다. 기타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도지사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재해대책기금과 경기도재난관리기금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하여야 한다.

도지사  
15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1.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
  2.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3.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시·군 지원
- ②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 ③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재해대책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재난관리기금운용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해대책기금은 방재계장이, 재난 관리기금은 재난출판계장이 된다.

제6조(융자조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5천만원이내,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로 2천만원이내
2. 대출금리는 연 5퍼센트이하
3. 융자기간은 8년이하
4.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제7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 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각각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등)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회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 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폐지조례)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경기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경기도재해대책 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 第35編 水資源・土地・建設業 第2章 水資源・自然災害對策 自然災害對策法

에 의하여 土地收用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① 土地收用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제62조 (國庫補助 등) ① 국가는 재해예방, 재해용수대책 또는 재해복구사업의 천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과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방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을 정하여 국고의 부담률 또는 보증금과 자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재민의 구호
2. 중학생 및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3. 영농·어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4. 정부양곡의 무상지급
5. 기타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④ 국가는 재해대책위원회의 실의를 거쳐 재해가 발생한 지역중 피해상황이 극심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군장비 및 병력을 지원하고 재해와 관련된 국고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 (災害對策基金의 積立)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의 대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 서의 地方稅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액의 1천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4조 (災害對策基金의 運用 등) ① 재해대책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한 재해예방등의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재해대책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총 70)

第35條 水資源·土地·建設業 第3章 水資源·自然災害對策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의하여 자체없이 시·도재해대책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그 배우자, 미성년자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인인 자녀, 혼자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등순의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이를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해아는 그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6조 (치료 및 보상금지급절차)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절차 및 부상자치료절차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5 및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 (재결의 신청) ①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용도)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예 방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

제59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 ①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따로 계좌를 설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및 시·군·군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 적

## 第12編 民防省・消防 第3章 災難管理 災難管理制度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地收用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를申請할 수 있다.

第55條 (補償 및 治療)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緊急救助活動에 참여한民間 緊急救助機關의 緊急救助委員과 第39條 및 第40條(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慘急措置 종사명령을 받은 者가 緊急救助 또는 慘急措置 종사중 負傷을 입은 때에는 治療를 실시하고, 死亡(負傷으로 인하여 死亡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에는 그 遺族 또는 장애를 입은 者에게 補償金을 지급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補償金을 지급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補償金에 상당하는 金額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治療 및 補償金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부담으로 하여, 그 기준과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6條 (災難管理基金의 積立) ①地方自治團體는 災難管理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災難管理基金을 積立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難管理基金의 매년도 最低 積立額은 최근 3年동안의 地方稅法에 의한 普通稅의 収入決算額의 平均額의 1千分의 2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한다.

第57條 (災難管理基金의 運用 등) ①災難管理基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災難의 預防 및 慘急措置의 용도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災難管理基金에서 생기는 収入은 그 전액을 災難管理基金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災難管理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本部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第34條 내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은 緊急救助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消防署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 第9章 罰則

第59條 (罰則)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

(주 91)

지급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53조 (치료 및 보상금 지급절차)** ①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자의 치료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내부부장관"은 "주무부처의 장"으로,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획위원회"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대책위원회"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민방위협의회"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로 본다.

**제5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①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와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 제2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시설등(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중점관리대상시설등에 한한다)의 안전진단

3.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4.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

5.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의 응급복구등 응급조치

6.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절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 95)

第12編 民防法・消防 第3章 災難管理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1996. 10. 28]  
[조례 제1602호]

개정 1997. 2. 24 조례 제1608호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여 적립된 양주군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제 3 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 총액의 50이상 을 중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4 조(기금의 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5 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 기금출납원 :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장
-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천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계좌후 3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결산결과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편 민방위재난관리 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부 칙 (1996. 10. 28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24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